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20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에 따른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의 인쇄·봉함, 취급조건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건 등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-33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1년 6월 13일

우정사업본부장

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의 인쇄·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

Ⅰ. 전자우편(e-그린우편) 취급조건

1.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·인쇄할 때의 취급조건

가. 출력·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

1)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 사무관리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(210㎜×297㎜)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(80g/㎡)로 함

2) 우편관서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우편물(이하 “다량우편물”이라 한다.)을 발송하고자하는 이용자는 용지의 규격이 표준규격과 다른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용지를 따로 제공할 수 있음

3) 다량우편물 이용자가 서식 등을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용지를 제공할 수 있음

4)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은 발송인이 내용문 및 수취인 주소록 등 필요한 자료를 보조기억매체(USB 등)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

나. 출력·인쇄물의 형태

1) 서식 등을 내용과 동시에 출력·인쇄함을 기본으로 함

2) 다량우편물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서식 등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도 내용을 출력·인쇄할 수 있음

3) 우편물의 내용은 이용자가 작성한 대로 출력·인쇄함

2. 우편물의 내용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할 때의 취급 조건

가. 봉투에 넣을 우편물의 내용

1) 출력·인쇄한 우편물은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최대 6매까지로 함

2) 출력·인쇄한 우편물에 이용자가 제공한 내용물을 추가해 같이 넣을 수 있음

나. 봉투

1) 우편물의 봉투는 창봉투를 기본으로 함(단, 메일머지 기능이 없는 전자우편(e-그린우편) 등은 민봉투를 사용할 수 있음)

2) 다량우편물로서 규격이 아닌 봉투나 특별한 표시를 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는 우편관서와 협의하여 따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음

3.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은 부가취급서비스

부가취급 서비스	서비스 내용	제작 수수료
내용증명	e-그린우편을 이용하여 다량의 내용증명을 제작·발송	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준용
계약등기	e-그린우편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제작하고 계약등기로 배달	
한지(내지)	e-그린우편 내지(A4복사용지) 대용으로 고급용지 한지이용	제작수수료에 30원 추가

가. 이용방법

1) 우체국 창구 : 내용문 1매, 접수물량이 50통 이상의 다량 내용증명을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

2) 인터넷우체국 : 내용문 20매까지 가능하며, 접수물량은 1통 이상부터 전자우편(e-그린우편)은 봉함식으로 접수하는 우편물에 한함

나. 제출조건

주소록(가변데이터)은 수취인 성명, 우편번호, 주소, 가변데이타 순으로 엑셀 파일 또는 Text 파일로 내용문은 한글, Text, 훈민정음, MS-WORD로 작성된 문서를 우체국 제출

※ 우체국 창구이용시 제공할 주소록, 내용문의 좌·우 여백 설정 등 기타 사항은 접수 일주일 전에 우체국과 협의

다. 이용요금

1)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, 내용증명수수료, 제작수수료 합계의 요금

예) 우체국 창구로 e-그린우편+내용문 1매를 e-그린우편 봉함식 일반 등기로 발송 시(내용문안 동일하게 3매 인쇄)

(우편요금 250원 + 등기수수료 1,500원) + 내용증명 수수료 1,000원 + e-그린우편 제작수수료 150원 = 2,900원

※ 단,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한 내용증명은 내용문 1매 제작으로 제작수수료 90원으로 산정하여 2,840원임(열람가능)

※ 우편요금, 수수료 등의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인상분 적용

2) 등기우편 감액률 적용 :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합산액의 3%

라. 서비스제공

1) 배달정보 보관 및 제공

가)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종적조회 자료(접수 및 배달정보 등)를 일괄 제공하되 전산자료는 3년 보관

나) 우체국창구 접수분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원부를 3년 보관

2)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부불필요 제도 이용가능

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환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(등기 환부수수료 비용절감 효과 있음)

Ⅱ. 전자우편(e-그린우편) 감액조건

1. 감액조건

발송인(계약자)이 동일하고, 1회 1만통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로 우편물의 종류, 중량 및 규격이 동일한 일반우편물

2. 감액률

구 분	우편요금 감액률(%)	제작수수료 감액률(%)	비 고
1만통 이상 ~ 5만통미만	8	2	ㅇ 우편요금 감액률은 총 우편요금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 ㅇ 제작수수료는 총 제작수수료의 합계에 감액률 적용
5만통 이상 ~ 10만통 미만	9	5	
10만통 이상 ~ 20만통 미만	11	8	
20만통 이상 ~ 30만통 미만	13	11	
30만통 이상	16	12	

부 칙

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-33호는 폐지한다.